

교육사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7. 3. 24.

개정 2009. 1. 17.

제 1 조 본 규정은 본 학회 및 회원의 연구윤리 준수와 교육사학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 2 조 본 학회 및 회원은 학회지 간행을 비롯한 각종 학회 활동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철저히 배격한다.

1. 타 연구자의 연구성과에 대한 무단 도용과 표절
2. 본인의 기 발표 또는 간행 연구성과의 재투고
3. 연구자료의 고의적 조작
4. 기타 학계의 통념 상 용납할 수 없는 연구 부정 행위

제 3 조 제2조에서 규정한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자행한 회원에 대해서는 사안의 종류 및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회원 자격 정지 또는 박탈
2. 학회지 논문 투고 및 게재 자격 정지 또는 박탈
3. 기 간행 학회지 논문의 경우 게재 취소 및 이의 공표
4. 관계 당국에 보고 또는 고발

제 4 조 연구윤리 위반 행위의 적발과 심사, 그리고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의 강구 등을 위하여 본 학회 산하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별도로 둔다. 단, '연구윤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편집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 5 조 연구윤리 위반 논문의 학술지 게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논문이 투고되면 편집위원회 간사는 온라인 검색 등을 통하여 투고 논문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논문이 있는지를 1차 검증한 후 논문을 정식 접수한다.
2.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투고 논문 심사기준의 하나로 삼아 논문 심사 단계에서 이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논문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 심사시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우선적으로 정밀 검증한 다음 본 심사를 진행한다. 만약 연구윤리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심사위원은 해당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를 중단하고 즉시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6 조 연구윤리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되면, 연구윤리위원회가 그 제재 방안을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실행한다.

제 7 조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 및 회원의 연구윤리 준수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